

# 공 급 자 적 합 성 확 인 기 준

## 속눈썹 열 성형기

## 부속서 9

### (Heated eyelash Curler)

**1. 적용범위** 이 기준은 정격출력전압이 DC 24 V 이하인 건전지 또는 직류전원장치 등의 전원을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켜 속눈썹을 위로 올리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속눈썹 열 성형기에 대한 안전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. 다만,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등 다른 법에서 별도 관리되고 있는 품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.

**2. 관련표준** 다음의 관련표준은 이 기준에 인용되며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. 이러한 관련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.

**KS C IEC 60335-2-23**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-제2-23부 : 피부손질 또는 모발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

### 3. 용어의 정의

**3.1 속눈썹 열성형기 (Heated eyelash Curler)** 발열체의 전기적 저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속눈썹의 외형을 일시적으로 변형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열성형기로 전열소자와 이를 감싸는 유연부 및 전원부, 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된다.

**3.2 정격 전압 (Rated voltage)** 제조자가 지정한 기기의 적정 사용 전압을 말한다.

**3.3 통상동작 (Normal operation)** 기기를 전원에 접속하고 통상의 사용방법으로 기기를 사용하였을 때의 상태를 말한다.

**3.4 자동온도조절기 (Thermostat)** 작동온도를 고정 또는 조정하여 통상동작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제어부의 온도를 특정 범위 내로 유지하는 기기를 말한다.

**3.5 온도과승방지장치 (Thermal cut-out)** 사용 중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, 회로를 자동차단하거나 또는 전류를 적게 흐르도록 하여 제어부의 온도를 제어하는 장치로 사용자가 임의로 그 설정 값을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장치를 말한다.

**3.6 발열부 (Heating part)** 속눈썹과 접촉이 예상되어 기기의 최대 온도를 내는 부분을 말한다.

### 4. 일반사항

**4.1 종류** 제품은 형태에 따라 “뷰러형”, “마스카라형”으로 구분하며, 그 외의 것은 “기타”로 구분한다.

**4.2 정격 전압** 기기의 정격전압은 DC 24 V를 넘지 않아야 한다.

### 5. 안전요건

**5.1 결모양 및 구조** 피부를 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끝처리가 없어야 하며 제품의 이상온도 상승을 방지하는 자동온도조절기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를 갖추어야 한다. 적합여부는 육안 및 촉감으로 확인한다.

**5.2 정상온도 상승** 기기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어떠한 위험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6.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발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나는 최고온도는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.

**5.3 이상온도 상승** 기기는 이상 사용 또는 부주의한 사용에 따른 안전성을 해치는 신체적 손상 및 감전, 화상 등의 위험을 가능한 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, 6.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발열체의 온도가 160 °C를 넘어서는 안된다. 또한 이상온도 상승시험 중 기기에 불꽃의 발생, 금속의 용융, 위험한 양의 유독성 또는 가연성가스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.

### 6. 시험방법

**6.1 시험조건** 시험은 주위온도 (20 ± 5) °C에서 실시하여 비접촉식 온도측정기(열화상카메라)를 사용한다.

**6.2 정상온도 상승시험** 3.3의 통상동작 및 6.1의 시험조건에 따라 시험한다.

**6.3 이상온도 상승시험** 기기의 이상운전은 온도조절기를 단락 시킨 상태에서 정상온도 상승시험의 조건으로 동작시킨다.

**7. 표시사항** 다음의 형식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며,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 이외의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 표시할 수 있다.

**7.1. 최고온도:** °C

**7.2. 제조연월**

**7.3. 제조자명**

**7.4. 수입자명**

**7.5. 주소 및 전화번호**

**7.6. 제조국명**

**7.7. 사용방법**

**7.8. 사용상 주의사항**

**8. 사용상 주의사항** 사용상 주의사항은 한글 또는 기호로 다른 표시사항보다 눈에 띄는 방법을 사용하여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. 다만,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하거나 다른 적절한 용어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사항을 표시한다.

- 1) 피부나 눈의 점막, 각막 등에 화상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방법을 숙지한 후 사용하십시오.
- 2) 유·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.
- 3)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경우 렌즈를 제거하고 사용하십시오.
- 4) 화기 또는 열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십시오.
- 5) 사용 중 눈에 이상이 느껴지면 눈을 비비지 말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.

제	정	:	기술표준원고시	제2012-0176호(2012.04.25)
개	정	:	국가기술표준원고시	제2015-686호(2015.12.30)
개	정	:	국가기술표준원고시	제2017-033호(2017. 2. 8)
개	정	:	국가기술표준원고시	제2018-0194호(2018. 6. 29)